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5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④(생략)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Ce클래스 수익증권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C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별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	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별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</p> <p><u>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</u></p>

<p>②(생략)</p>	<p><u>큰 매매이익</u> 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 ①·②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5.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5. (현행과 같음) <u>6. Ce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7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 ①·②(생략) 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·⑤(생략)</p>	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·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~4.(생략)</p>	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~4.(현행과 같음)</p>

<p>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6.~10.(생략)</p> <p>②~⑩(생략)</p>	<p>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 및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</u>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6.~10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⑩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p>